

[별표 2] <개정 1991.9.27, 1993.10.30, 1994.11.19, 1995.3.2, 1997.3.17>

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

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 (제15조의6 관련)

1. 등록최저기준대수

(단위 : 대)

업종	자동차대수	
	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지역	군지역
전세버스운송사업	특별시·광역시 30, 시지역 20	10
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	1	1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	50	50
컨테이너운송사업	10	10
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	1	1

비고

-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등록대수의 80퍼센트(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60퍼센트)이상인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이어야 한다.
-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.
-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하여야 할 자동차대수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지역은 10대이상, 군지역은 5대이상이어야 한다.
-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뱃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톤이어야 한다. 다만, 등록대수가 3대이상 5대미만의 경우에는 1대, 5대이상의 경우에는 매 5대마다 1대씩 5톤미만의 뱃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.

2. 최저자본금

(단위 : 100만원)

업종	금액
전세버스운송사업	특별시·광역시 500, 시지역 300, 군지역 200
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	50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	500
컨테이너운송사업	200
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	100

3.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

업종	대당면적 (㎡)	비고
가. 전세버스운송사업 (1) 대형 (2) 중형	36 ~ 40 23 ~ 26	
나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(1) 대형 (2) 중형 (3) 소형	36 ~ 40 23 ~ 26 15 ~ 17	26인승이상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. 25인승이하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.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를 말한다.
다.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·컨테이너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		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(견인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한다. 다만, 피견인자동차를 세워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

		다)
--	--	----

비 고

1.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.
 - 가.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나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다.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·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
 - 라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
 - 마.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컨테이너야적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
 - 바. 타인소유토지(차고지를 포함한다)를 3년이상(화물자동차는 1년이상으로 한다) 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
 - 사. 창고·판매·제조업등 수송수요유발업을 겸업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수송수요유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
 - 아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
2.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3.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.
4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.
4. 부대시설기준

별표 1의4. 부대시설기준을 준용한다. 다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 - 가. 5개이상의 시·도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. 다만,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
 - 나.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관시설 및 적하장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통신망을 갖추는 것